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제12대 조종수 회장 취임식 거행



우리협회는 6. 26(금) 오후 3시 대구시티센터(구 밀리오레) 2층 자스민홀에서 제12대 조종수(趙鍾壽)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조종수 회장은 지난 5. 20 개최된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6월 26일부터 2012년 6월 25일까지 3년이다. 또한 우리협회는 조종수 회장과 함께 일할 임원으로 감사 1명, 대의원 3명, 간사 20명, 윤리위원 7명도 선임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대목 대구시 건설방재국장, 시의회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 등 시의원, 이정섭 본회 상임감사가 축사를 하였으며 문영수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지역 건설관련 경제단체장,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조종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62년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건설협회의 대구광역시회장 취임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갖는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무엇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사회 각계 각층의 변화와 개혁 바람에 맞춰 발전적인 협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상응하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협회가 되도록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건설경기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 대중소업체간 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 적정규모이하 공사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 대중소 업체 모두가 공동참여 하도록 노력
-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부응해 그동안 건설산업을 옥죄었던 건설주택부동산 규제 등 각종 반시장적 규제 개선
- 세계대회 성공개최, 국가산업단지 조성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등으로 대구가 선진 일류도시가 되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
- 「대구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유기적·지속적인 활동등의 의욕적인 포부를 밝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였다.

<조종수 회장 주요 약력>

- 1970. 2 청구고등학교 졸업
- 1974. 2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1976. 6 ROTC 12기 공병중위 전역
- 2003. 5 (주)서한 대표이사(현)
- 2009. 4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위원(현)
- 2009. 6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우리사회 임원 명단(임기 2009. 6.26~2012. 6.25)

■ 제12대 회장

업 체 명	성 명	비 고
(주) 서 한	조 종 수	

■ 제11대 감사

업 체 명	성 명	비 고
반석종합건설(주)	구 자 윤	

■ 제19대 대의원

업 체 명	성 명	비 고
(주) 서 한	조 종 수	
유진종합건설(주)	도 재 덕	
화성산업(주)	이 흥 중	

■ 제11대 간사 (20명)

업 체 명	성 명	업 체 명	성 명
유진종합건설(주)	도재덕	삼 하 건 설 (주)	최 운
화 성 산 업 (주)	이흥중	동양종합건설(주)	최종해
삼 아 건 설 (주)	배 청	(주)문화종합건설	김대영
(주)선우종합건설	오상두	(주) 상 원 건 설	변광수
세 창 건 설 (주)	최호중	(주)우주종합건설	이재영
(주) 흥 일 건 설	김일상	(주)진덕종합건설	박상경
(주)신성종합건설	조래영	동 우 토 건 (주)	박상현
청 구 개 발 (주)	윤찬운	(주)우인종합건설	권순곤
명국종합건설(주)	이기운	신세계건설 (주)	황상진
(주)미도종합건설	전재준	(주)대마종합건설	김성국

※ 간사회 구성 : 회장, 감사, 간사등 총22명

■ 제11대 윤리위원 (7명)

업 체 명	성 명	비 고
(주) 서 한	조 종 수	
(주) 동 화 주 택	김 길 생	
(주)월성주택건설	최 재 흥	
경상종합건설(주)	한 대 곤	
범진종합건설(주)	김 현 달	
(주)시그마종합건설	이 창 우	
(주)건구종합건설	허 태 정	

※ 간사 : 사무처장

2008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지난 4월 각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어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및 확인서 발급이 시작되었다.

2008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보면 재무구조와 경영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평균부채비율이 200%를 넘었으며, 매출액순이익율은 4.24%로 지난해 8.01%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국내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최저가낙찰공사 증가에 따른 수익성악화 그리고 대형건설업체 입찰시 주로 신용평가등급 적용등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8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기술인력 및 신인도 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7월말에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이 발표될 예정이다.

-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 발급개시일 : 2009. 7. 1(수)
- 발급방법 : 우리사회 사무처 및 인터넷 발급
- 2008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2008평균비율	전년도평균비율
부 채 비 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200.88	172.23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27.11	138.14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21.64	23.02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배	3.91	4.70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	5.50	6.12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4.24	8.01
총자산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	3.48	7.2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1.49	2.06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회	0.94	0.96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2.73	2.44

낙동강살리기사업 대구구간 3개공구 턴키발주

지난 6. 29 조달청은 '낙동강살리기사업'중 대구구간 3개공구를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하였다.

대구업체가 지역업체로 참가가능한 3개 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22공구, 24공구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요 23공구인데 3개공구 모두 공사현장이 경북과 접하고 있어 경북소재 업체도 지역업체로 참가가 가능하다.

이과정에서 24공구(성주,칠곡)는 달성군 하빈면도 접하고 있음에도 당초 경북소재업체로만 의무공동도급하도록 입찰공고되어 우리사회가 대구시와 함께 긴급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하여 대구업체도 지역업체로 참여토록 정정공고하게 하였다.

이번 발주된 3개공구 모두 턴키로 발주됨에 따라 지난 6. 29일 개정된 재정부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따라 지역업체는 최소 20% 지분으로 참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턴키공사이의 낙동강살리기사업중 향후 대구지역업체가 참가가능한 공사는 21공구(공사비 600억원정도, 최저가발주)와 금호강 정비사업(1차사업비 137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발주될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낙동강 살리기사업 대구업체 참여확대 건의

한편 우리사회는 금번 발주된 낙동강살리기 사업중 대구업체가 참가가능한 공사 3개 모두 턴키로 발주됨에 따라 그간 4대강사업 참여를 희망하여온 지역업체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게 되어 7. 2(목)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건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시에 긴급 요청하였다.

《 건의사항 》

- 턴키방식으로 발주요청한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 '20%이상'을 '30%이상'으로 정정공고토록 건의
- ※ 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을 20%이상으로 하고 있어 발주처의 장은 30%이상으로도 입찰공고 가능
- 또는 지역업체 공동참여비율을 의무비율 20% 이외에 권장사항 40%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정공고토록 건의

4대강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위한 관련제도 개정

정부는 지난 6. 29일 4대강살리기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조치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과 재정부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을 개정하였다.

먼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2호를 추가개정하여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을 개정하여

-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은 40% 이상(다만, 턴카대안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지역업체와 의무적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였으며
- 이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지역업체가 턴카대안공사는 20%, 일반공사는 40% 이상 참여하게 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발주되는 하천정비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분류할 방침임에 따라 대구의 경우 금호강정비사업도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참여 가능하게 되었다.

상호협력관계 ‘지원실적분야’ 평가기준 안내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체를 상대로 “**특정 노무관리 전산프로그램(일명:김반장 플러스)**을 구매하여 협력업자에 제공하면 **지원실적(교육분야, 경영 및 재무분야)에서 7점**을 받을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경영·재무분야 지원실적 평가기준

- 협력업체에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경영·재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인정사례)

- 1) 협력업체에게 선진화된 전산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중
- 당해 협력업체가 연간 계속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사실이 추후 별도의 확인절차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협력업체에게 무상 제공하였다고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2)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비율이 우수한 경우
- 발주처에서 수령한 현금비율 보다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현금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사실확인된 경우
- 3)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 발주처로부터 대금 받기전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협력업체와 전자계약한 경우 등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3동 33-10 법무빌딩 406호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6-2607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에 대하여

1. 사 례

건설업체 甲은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던 중에 건설업 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공을 계속하다가 신규로 건설업체 乙 명의로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업 등록을 한 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 그 시공실적을 건설업체 乙이 한 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 79282 판결)

“나머지 공사 부분 중 단일구조물로서 독립하여 공사 실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규 면허에 기하여 발주자로부터 새로이 도급을 받아 완공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규 면허 취득 후 시공한 부분은 위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시공한 것일 뿐 신규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로서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가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4조 제3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를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업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시공은 건설업자가 한 시공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부심사기준을 위반한 낙찰자결정의 효력 유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위 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일관되게 “세부심사기준을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4. 결 어

결국 건설업체 乙은 자신들이 한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만약 입찰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시공실적으로 처리되어 낙찰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자결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9. 6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756,000	726,000	전년대비 수요량이 20~30% 감소로 인해 가격 약보합세(4%)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급은 원활함	단위: M/T 현장도착도
		D13mm	746,000	716,000		
		D16mm	741,000	711,000		
	고장력 철근	D10mm	761,000	731,000		
		D13mm	751,000	721,000		
		D16mm	746,000	716,000		
후판	SM490B	1,050,000	880,000	건축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급 무난함	단위: 개 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890,000	850,000	약보합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급 원활함	단위: M/T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890,000	850,000			
	400X400X13X21mm	950,000	95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300	3,650	벨크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레미콘가격 인상도 예상되지만 수요감소로 수급 무난함	단위: 포 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9,700	49,700		단위: m ³ 현장도착도	
	#467(40-240-15)	48,700	48,700			
벽돌	㉠190X90X57mm	45	45	시멘트가격 인상으로 가격인상추진 중이며 수급 원활함	단위: 개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20,000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수요감소로 전체적인 수급에 현재 큰 어려움 없음	단위: m ³ 시내도착도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1,020	1,020	공급감소 추세이나 대체재로 인하여 수급 원활함	단위: 才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180	1,180		

■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기 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월 (2009.06.01~06.30)	2	27	8	0	37
누계 (2009.01.01~05.31)	7	51	48	1	107



♣ 2/4분기 계약실적 조사 협조안내

- 조사대상 : 2/4분기(4월~6월)내 신규계약한 공사
- 제출기한 : 2009. 7. 1(수) ~ 7. 10(금)까지

♣ 최근10년간 동일(유사)실적 무료등록

우리협회는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최근10년간 동일실적(개별실적)증명을 인터넷(<http://cert.cak.or.kr/pcak/>)으로 하고 있는바, 회원사 입찰편의 증진과 실적관리 효율화를 촉진하기 **금년말까지 등록하는 공사실적에 한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많은 회원사에서 개별실적을 무료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에 종전 등록비(건당 2만원) 환원 예정
 ※ 문의 : 02-3485-8338(대한건설협회 본회 건설정보실)

회원동정

◆ (주)화성개발 도훈찬 대표이사 국무총리 표창

(주)화성개발 도훈찬 대표이사가 지난 6.18일 건설의날을 맞아 지역건설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 (주)도화종합건설 김정환 대표이사 국토해양부장관상 수상

(주)도화종합건설 김정환 대표이사는 지난 6.11일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준공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명국종합건설(주) 이기운 대표이사 대구KBS 출연

우리협회 간사인 명국종합건설(주) 이기운 대표이사가 협회 임원자격으로 대구 KBS 프로그램인 "목요진단"에 6. 25일 출연하여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회장동정

❁ 2009 건설의날 기념행사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6. 18(목) 15:00 본회 2층 대회의실
- 하신일 : 행사 참관 및 관계자 격려

❁ 대건회 정기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6. 25(목) 19:00 호남정식당
- 하신일 : 대건회 총회 축하 및 회원 격려



❁ 취임인사 언론 및 유관기관 방문

- 언론사 : KBS, MBC, TBC,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등 지역 언론사 사장 및 편집국장 방문
- 유관기관 : 대구광역시, 시의회, 경찰청, 노동청, 조달청 등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다

회원현황

■ 회원수 : 174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1	64	15	3	1	174	3
중구	9	2		1		12	
동구	11	8	2	1		22	
서구	4	4			1	9	
남구	10	5	1			16	
북구	9	13	2			24	
수성구	26	20	2			48	
달서구	8	10		1		19	
달성군	14	2	8			24	

※ 신입3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대광토건	토건160163	오 상 노	2009.06.03	742-0477
(주)대금주택	건축030258	강 윤 복	2009.06.23	641-4981
대성이앤씨(주)	산업환경030013	박원진,김영훈	2009.06.29	606-1542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디비디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95-12	대구 달서구 대천동 595-6	588-7122
대표자	보국건설(주)	남 병 주	남 병 학	770-1000
대표자	(주)씨앤유방	임 병 석	관리인 심명대	607-9000